

[별지 제1호 서식]

《앞면》

이사물품 반입내역서						처리기간 즉 시
이 사 자	①성 명	②국 적		한국(비영주권자, 영주권자), 외국인()		
	③직업	④여권번호		⑤생년월일		
	⑥주소	해외(국가도시명) :	⑦국내전화번호 (휴대전화)			
		국내(자세히):			⑧E-mail	@
⑨거주(예정)기간(내국인은 외국에 거주한 기간, 외국인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 할 기간) : ~ * 거주(예정)기간에 따라 아래의 해당란 □에 "V"표시 하시기 바랍니다. □개인 1년 이상(이사자) □가족동반 6월 이상(이사자) □개인 3월~1년 미만(단기체류자) □가족동반 3월~6월 미만(단기체류자)						
동 반 가 족	⑩성 명	⑪이사자와의 관계	⑫생년월일	⑬여권번호	⑭직업	⑮거주기간
운 송 내 역	⑯선적항(국가)	⑰B/L(house) No				
	⑯운송의뢰일/국내도착일	/	⑲운송회사 (Forwarder)	해외		
	⑯운임		국내	GLS KOREA		
*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□에 "V"표시하시기 바라며, 뒷면에 신고대상물품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⑰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? 있음 없음						
1. 총포·도검·석궁 등 무기류·실탄 및 화약류·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(모의총포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. 아편·헤로인·코카인·히로뽕·MDMA·대마 등 마약류,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3. 동물(고기, 가죽 털 포함)·식물·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식품류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4.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(호랑이, 코브라, 거북, 악어, 산호, 응답, 사향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5.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, 위조지폐 및 위·변조된 유가증권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6.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,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7. 신고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도착한 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8.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, 감청설비,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				
이 반입내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	
붙임서류 : 1. 필요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또는 재외영주권 1부 2.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3. 필요시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(영주권자만 해당) 또는 비자 사본 1부(외국인에 한함) 4. Packing List(포장명세서) 1부 5. 선하증권(B/L) 또는 화물운송장(Airway Bill) 사본 1부 6.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1부 7.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(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)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《뒷면》

- ※ 세관기재란은 기재하지 마시고, 사용월수란에는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시고,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은 빈칸에 기재하십시오.
 - ※ 현품검사 입회시 물품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공무원에게 펼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3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3월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신고대상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 납부 세액의 20%가 가산세로 부과되며,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임장

1. 위임 받는 자

주 소: 101-86-04716
전 화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95
주민등록번호: (주) 지엘에스코리아
성 명: 대표이사 인 창 혁 서명/날인



위 사람에게 아래 목록에 기재된 이사물품(자동차 유, 무)의
귀 세관 통관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

2. 위임 내역

B/L 번호 또는 (화물관리번호)	선 명	적출국	포장갯수	중량(Kg)

3. 위임 하는 자

주 소:
전 화:
주민등록번호:
성 명: 서명/날인

세관장 귀하

유의사항

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